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2.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2.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도하석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2024. 2. 2.(금)
- 회부일자: 2024. 2. 2.(금)
- 검토기간: 2024. 2. 5.(월) ~ 2. 8.(목)

2. 개정이유

-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직장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설치 규정(안 제2조)
- 나. 역량 강화,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실시 규정(안 제18조)
- 다. 실적이 우수한 단원 및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안 제19조)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역량 강화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¹⁾할 수 있는 교육·상담 등을 실시하고, 우수한 단원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부에 이어 2023년 장애인 수영부를 신설하면서 소속 단원들이 늘어나 선수 역량 강화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²⁾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정원 및 현원 현황

구분	정원			현원		
	합계	지도자	선수	합계	지도자	선수
검도부	12	2	10	10	2	8
장애인 수영팀	4	1	3	3	1	2

-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과 선수 인권보호을 위한 조치를 명시한 운영규정을 작성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의5제1항을 살펴볼 때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책 시행의 필요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 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에 대해, 당시 경주시는 선수 처우 실태 등을 감독하지 않고, 감독의 의사 결정에 직장운동부가 좌지우지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2) 경기도 성남시는 2021년 6월 1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운동부 인권보호관'을 채용해 인권침해 상담실 운영에 들어가, 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1대1 심층 면담을 하고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도를 진단한다.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